

# 프 로 그 램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 일시 : 12. 14(화) 13:00 ~ 15:00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백석대학교

시간	프로그램 내용
13:00~13:10	<b>[사회]</b>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10~14:10	<b>[발제]</b> CCTV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 김상균 목욕탕, 발한실 등 CCTV 실태조사 발표 : 송병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 조용철 민간부문 설치 CCTV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및 웹사이트 노출 실태 : 박성훈
14:10~14:40	<b>[지정 토론]</b>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노사정책국 차장)
14:40~15:00	<b>[전체 토론]</b>

# 목 차

## ■ 발제

CCTV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	1
김상균 (백석대학교)	
목욕탕, 발한실 등 CCTV 실태조사 발표 .....	9
송병호 (백석대학교)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발표 .....	17
조용철 (백석대학교)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발표 .....	25
박성훈 (백석대학교)	

## ■ 토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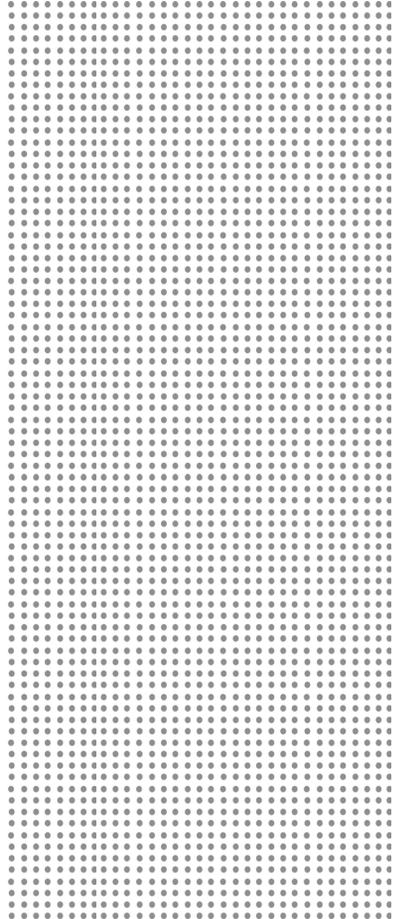
41

-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류재호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노사정책국 차장)

# CCTV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김상균 (백석대학교)





민간부문 CCTV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CCTV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2010. 12. 14

백석대학교  
김상균

## 목 차

CCTV 실태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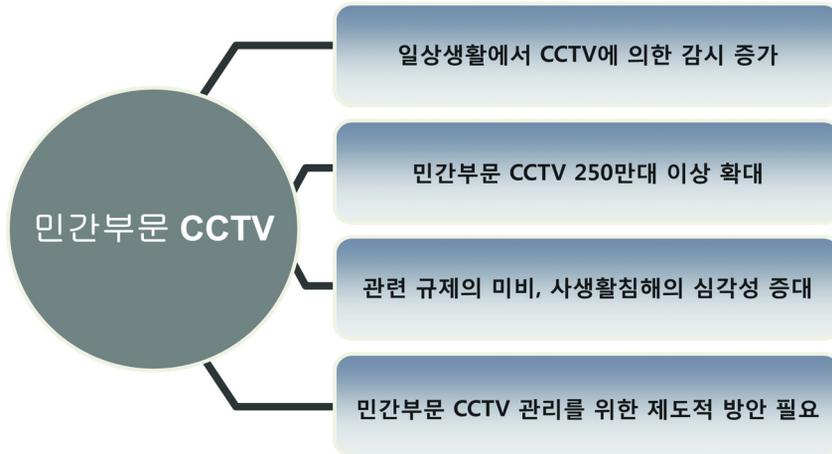
CCTV의 개념 및 성능

CCTV의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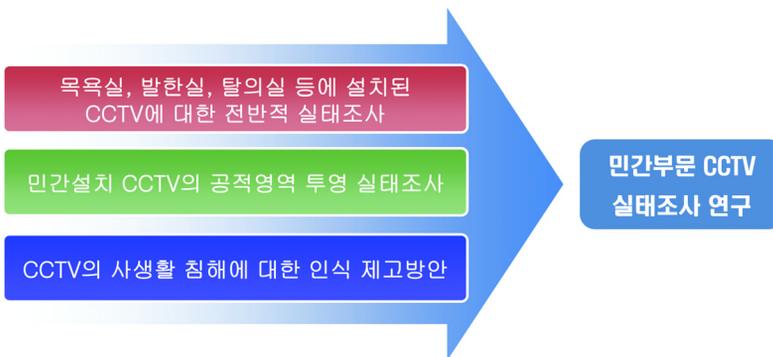
CCTV의 이론적 논의 및 문제제기

## 1. CCTV 실태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1)



## 1. CCTV 실태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2)

민간부문 CCTV는 그동안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CCTV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공적영역 투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



## 2. CCTV의 개념 및 기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

- CCTV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2조 -

### CCTV의 긍정적 기능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의 목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안전 효과)

VS.

### CCTV의 부정적 기능

인권침해적 요소, 프라이버시권 침해  
CCTV로 인한 범죄전이효과(풍선 효과)

## 3. CCTV의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1)

구분	주요 유형	주요 특징 및 인권침해적 요소
일반형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로 건물외곽, 실외용으로 활용</li> <li>2. 모방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저가 보급형)</li> <li>3. 인권침해적 요소 : 주택가, 상업시설 등 주로 건물외곽 및 실외용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사례임</li> </ol>
팬틸트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하좌우 고속회전, 야간 노출보정</li> <li>2. 물체 자동 추적, 양방향 음성지원</li> <li>3. 인권침해적 요소 : 촬영대상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상하좌우 회전하면서 촬영하므로 실내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출입구 방향의 도로 등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사례가 될 수 있음</li> </ol>
네트워크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성능, 고해상도 광학 줌 렌즈 가능</li> <li>2. 다양한 해상도의 실시간 고화질 영상 및 음성 전송 가능</li> <li>3. 인권침해적 요소 : 안정적인 하드웨어 및 고성능 줌렌즈 탈부착이 가능하며, 음성녹음 기능을 포함하는 기종은 대상자의 직접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음</li> </ol>

### 3. CCTV의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2)

구분	주요 유형	주요 특징 및 인권침해적 요소
적외선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외선(야간용) 기능</li> <li>2. 광학 30배(디지털10배) 줌기능</li> <li>3. 물체 자동 추적, 양방향 음성지원</li> <li>4. 인권침해적 요소 : 적외선 기능을 활용하여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며, 줌기능 외에도 스피커폰을 통하여 경고메시지 등을 전하는 등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ol>
핀홀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소형 핀렌즈 사용</li> <li>2. 무선송신 가능, 30만화소 지원가능</li> <li>3. 인권침해적 요소 : 초소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무선송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이상성유자 등에 의해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li> </ol>
차량용 카메라 (블랙박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행중 또는 24시간 촬영(전원연결)</li> <li>2. 디지털 저장방식, 2채널(후면) 가능</li> <li>3. 인권침해적 요소 : 주행중 또는 24시간 공공영역인 도로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의 차량운행정보 및 인도의 일반 시민의 모습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고 있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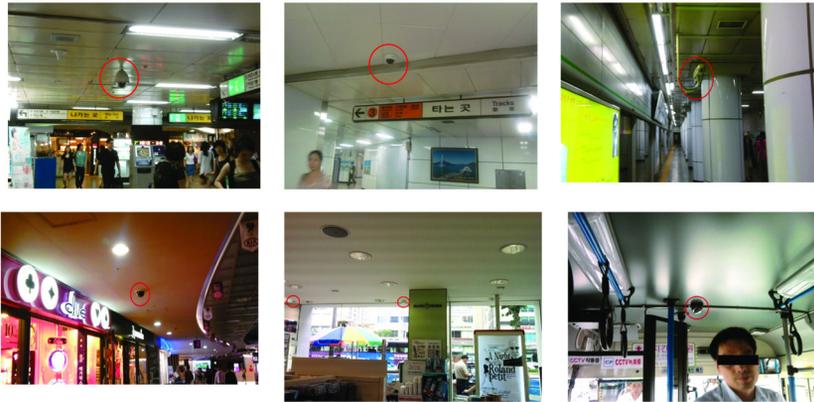
### 4.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사례(1)

설치목적별	유형 및 장소	비고	
공적영역	방범용	주택가, 학교주변, 도로입구 등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
	교통단속용	주정차금지 지역, 교통밀집지역, 주요사거리 등	
	시설관리용	공공시설(주차장 포함), 공항 등	
	기타	쓰레기투기 방지용, 산불 및 재난관리 등	
민간영역	보안용	아파트, 상업용건물(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등)	관련규정 없음
	도난방지용	상점 내(계산대, 출입구, 진열대 등)	
	기타	은행, ATM기기, 차량용 블랙박스(음성녹취) 등	

## 4.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사례(2)



## 4.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사례(3)



## 5. CCTV의 이론적 논의 및 문제제기

### CCTV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됨

-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현실임

### CCTV의 기술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은 약 24만대, 민간부분은 약 250만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
- 적외선 촬영(야간촬영), 줌기능(가시거리, 해상도), 팬틸트기능(상하좌우 회전), 핀홀카메라(초소형 은닉가능), 차량용 블랙박스 등 일상생활 곳곳에 설치됨

### CCTV 설치에 관한 국내외 관계법을 및 추세

-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CCTV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규제 강화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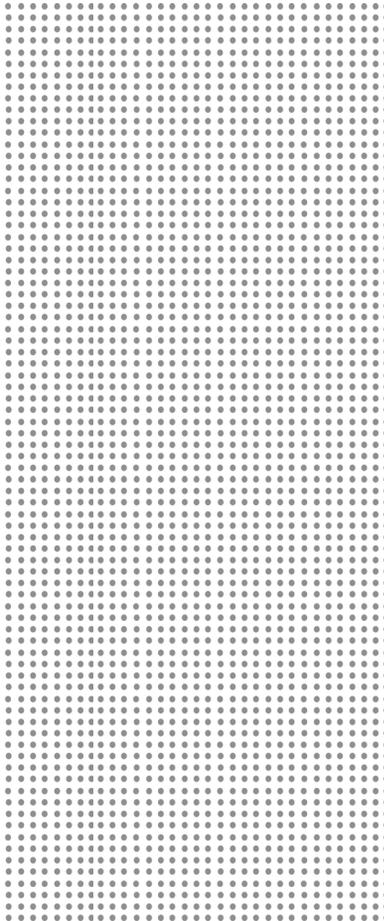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 목욕탕, 발한실 등 CCTV 실태조사 발표



송병호 (백석대학교)







# 목욕탕, 발한실 등 CCTV 실태조사 발표

2010. 12. 14

백석대학교  
송병호



## 목 차

CCTV 실태조사 방법

CCTV 실태조사 대상 구분

CCTV 실태조사 결과분석

CCTV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제기

# 1. CCTV 실태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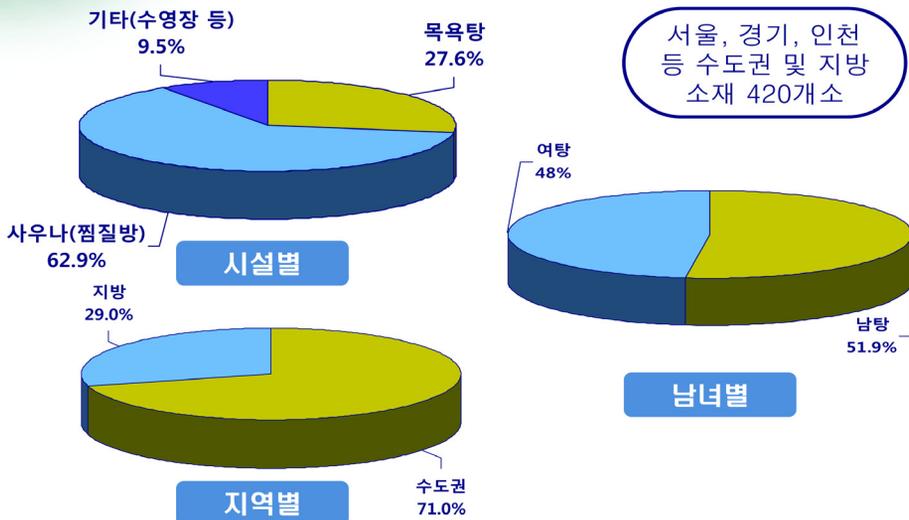
##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등 CCTV 실태조사

- 1) 2010년 5월 1일 ~ 16일(1차 조사), 8월 23일~9월 17일(2차 조사)
- 2)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천안, 대전, 대구 등 지방 등 총 420개소
- 3) 조사대상 샘플 추출, 조사원의 직접 방문조사, SPSS 11.0 통계처리

## CCTV 실태조사에 따른 관련 개념의 정의

- 1)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등 실태조사의 장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됨
- 2) 휴게실, 수면실의 경우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탈의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체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의실의 개념으로 포함
- 3)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부시설에서 탈의실과 연결되어 신체노출이 있다는 점에서 탈의실로 포함 (단, 카운터가 출입문 외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제외)
- 4) 복도의 범위는 탈의실과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탈의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체노출이 있다는 점에서 탈의실로 포함

# 2. CCTV 실태조사 대상 구분



### 3. CCTV 실태조사 결과분석(1)



### 3. CCTV 실태조사 결과분석(2)

#### 시설별 CCTV 설치유무

구분			유무		전체
			없음	있음	
시설 유형	목욕탕	빈도	67	49	116
		시설유형증%	57.8%	42.2%	100.0%
		유무증%	59.8%	15.9%	27.6%
	사우나(찜질방)	빈도	48	216	264
		시설유형증%	18.2%	81.8%	100.0%
		유무증%	40.3%	71.8%	62.9%
	기타(수영장 등)	빈도	4	36	40
		시설유형증%	10.0%	90.0%	100.0%
		유무증%	3.6%	11.7%	9.5%
전체	빈도	119	301	420	
	시설유형증%	28.3%	71.7%	100.0%	
	유무증%	100.0%	100.0%	100.0%	

### 3. CCTV 실태조사 결과분석(3)

#### 남녀별 CCTV 설치유무

구분			유 무		전 체
			없음	있음	
구분	남탕	빈도	54	164	218
		구분중%	24.8%	75.2%	100.0%
		유무중%	45.4%	54.5%	51.9%
	여탕	빈도	65	137	202
		구분중%	32.2%	67.8%	100.0%
		유무중%	54.6%	45.5%	48.1%
전 체	빈도	119	301	420	
	구분중%	28.3%	71.7%	100.0%	
	유무중%	100.0%	100.0%	100.0%	

### 3. CCTV 실태조사 결과분석(4)

#### 목욕시설 내 CCTV 설치유무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없음	229	54.5	없음	219	52.1	없음	323	76.9
있음	191	45.5	있음	201	47.9	있음	96	23.1
전체	420	100.0	전체	420	100.0	전체	420	100.0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없음	341	81.2	없음	407	96.9	없음	414	98.6
있음	79	18.8	있음	13	3.1	있음	6	1.4
전체	420	100.0	전체	420	100.0	전체	420	100.0
접질방공용부분			수면실			발한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없음	317	87.3	없음	231	86.5	없음	388	92.4
있음	46	12.7	있음	36	13.5	있음	32	7.6
전체	363	100.0	전체	267	100.0	전체	420	100.0

### 3. CCTV 실태조사 결과분석(4)

#### 시설별, 성별, 지역별 차이분석

1

목욕탕보다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출입문, 신발장, 카운터 등에 CCTV 설치비율이 높았음 (목욕탕의 영세성 원인)

2

목욕탕보다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CCTV 설치고지비율이 높았음 (사우나, 수영장 등의 대형화 및 단속대비 원인)

3

수도권보다 지방 시설에서 화장실, 탈의실 등 인권침해 우려장소에 CCTV 설치비율이 높았음 (지역별 인식차이 및 지역적 영세성 원인)

4

여탕보다 남탕에서 CCTV 설치비율 및 CCTV 설치고지비율이 높았음 (여성고객의 민감한 반응을 우려한 업주의 선택 원인)

### 4. CCTV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제기(1)

#### 관련 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CCTV 설치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및 설치 금지 장소에도 설치

#### 인권침해 문제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목욕탕 홀, 탈의실, 발한실 뿐만 아니라 수면실, 목욕실, 화장실 입구 등 전신이 노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심각함

#### 영상관리 문제

CCTV 영상 모니터가 확인되지 않음으로서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신체노출 영상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

## 4. CCTV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제기(2)

### CCTV 성능발달

CCTV 기술발전으로 고화질 및 줌기능의 향상(4~400배), 소형화(핀홀카메라 등), 화상 전송(네트워크 카메라 등), 적외선 기능, 모션인식, 투망형 추적 등이 가능하여 관리되지 않은 CCTV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음

### CCTV 기술남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 등 사생활 침해가 비교적 적은 장소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360° 회전 가능한 CCTV의 설치, CCTV의 각도 조정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관련규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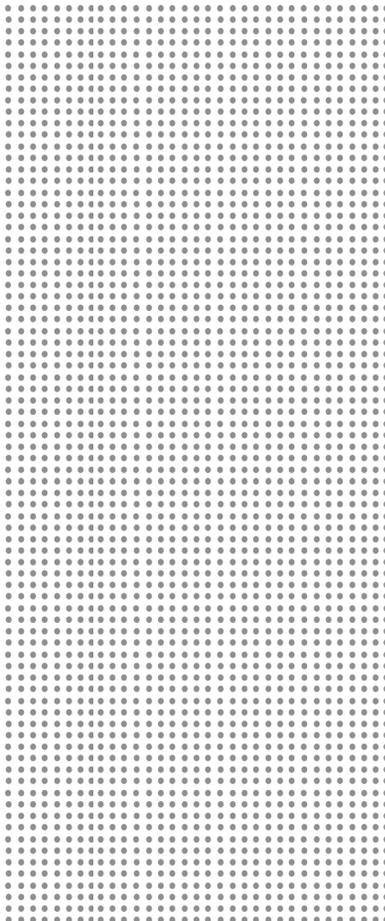
「공중위생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CCTV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의 CCTV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으며, 설치된 민간 CCTV의 사생활 침해를 관리할 수 없어 사전적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

감사합니다.



#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조용철 (백석대학교)





민간부문 CCTV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2010. 12. 14

백석대학교  
조용철

## 목 차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방법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결과분석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장소분석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의 문제제기

# 1.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방법

##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 1) 2010년 6월 15일 ~ 30일(15일간)
- 2)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천안지역 중심(상업지역, 주택가, 대학 등 포함)
- 3) 대학생 사례와 일반인 사례를 구분하여 Life Style에 따른 CCTV 노출 분석

## CCTV 실태조사에 따른 범위의 확정

- 1)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촬영되고 있는 CCTV를 민간부문 CCTV 범위로 포함시킴(지하철공사, 버스회사 등이 CCTV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CCTV와 구분 요함에 의해)
- 2) 대학생 사례 : 방학중 실습장소 중심, 강남구 쇼핑몰 중심, 천안지역 및 학원 통학 중심(3일간) 등
- 3) 일반인 사례 : 출퇴근 장소 중심, 직장 및 주거지역 중심,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 중심 출퇴근길 동선 중심(약 500M) 등

# 2.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결과분석(1)

## 대학생 A, 방학중 실습장소 (1일 59회 노출)

- 1) 지하철을 환승하면서 계단, 매표소, 환승구 등 약 50여곳의 CCTV에 노출
- 2) 1개 역사를 기준으로 약 5회~ 10회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

## 대학생 B, 강남구 쇼핑몰 (1일 110회 노출)

- 1) 강남구 쇼핑몰의 경우 1시간 체류중 민간 CCTV 35개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
- 2) 지하철 CCTV를 포함하여 1일 110회 노출(공공부문 CCTV 포함, 7대)

## 대학생 C, 천안 및 학원 (1일 평균 83.4회 노출)

- 1)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을 중심으로 1일 최소 62회 ~ 최대 112회로 CCTV에 노출
- 2) 지하철, 쇼핑몰, 상점 등 건물내외 시설에서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

## 2.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결과분석(2)

### 직장인 D, 출퇴근 장소 (1일 93회 노출)

- 1) 지하철, 지하상가, 식당, 도로변의 상점 등에서 1일 약 70건이 집중적으로 노출 (직장인의 근무지를 포함하여 직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 직장인 E, 직장 및 주거지역 (1일 67회 노출)

- 1) 대중교통시설 CCTV 외에도 시장, 스포츠센터 등 주거지역에 중점적으로 노출
- 2) 퇴근이후 주거지역에서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1시간에 20회이상 CCTV에 노출

### 주부 F, 아파트 및 백화점 등 (1일 86회 노출)

- 1)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과 백화점 등 상업지역에서 CCTV 노출
- 2) 백화점에서는 체류하는 약 3시간동안 총 45회 CCTV에 노출 되는 것으로 분석

## 3.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장소분석(1)

### 상업지역 및 쇼핑센터



- 1) 도난방지, 증거확보 등의 범죄예방 목적으로 주로 설치
- 2) 계산대, 출입구 방면 CCTV의 공적영역 투영 빈번함



### 3.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장소분석(2)

####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 1) 아파트단지의 경우 경비원 인건비 상승의 대체수단으로 CCTV 설치 사례 증가
- 2) 입주전부터 또는 주민회의를 통해 단지입구, 주차장,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



### 3.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장소분석(3)

#### 대중교통시설 (지하철 등)

- 1) 지하철의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플랫폼 등 시민의 동선에 따라 1개 승하차역당 최소 6회이상 CCTV에 노출
- 2) 버스 출입구와 택시 내 영상/음성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발생



## 4.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의 문제제기(1)

### CCTV 촬영거리, 각도

- 1) CCTV의 성능과 기술의 고도화는 CCTV 촬영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촬영이 가능
- 2) 촬영 각도에 따라 공적영역인 일반도로를 근접한 촬영범위로 포함



## 4.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의 문제제기(2)

### CCTV 관리주체 문제

- 1) CCTV의 촬영영상정보는 업주 및 직원이 관리하며 기록보존에 제한이 없음
- 2) CCTV의 촬영영상 대부분이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사이트 또는 P2P 사이트 등을 통하여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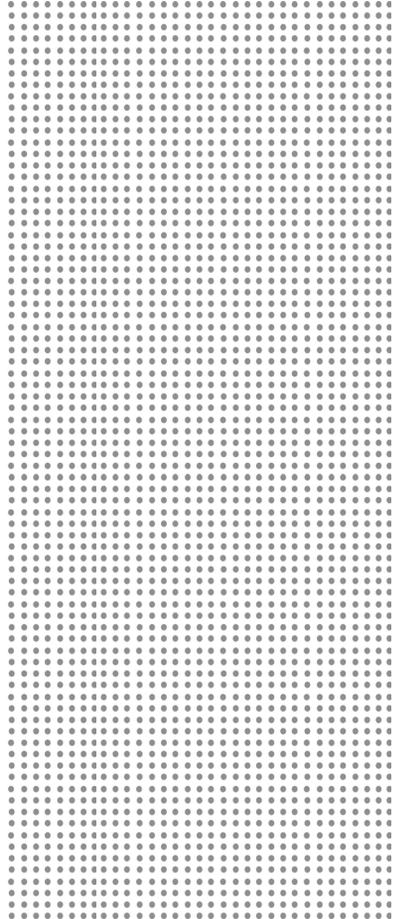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 민간부문 설치 CCTV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및 웹사이트 노출 실태



박성훈 (백석대학교)





# 민간부문 설치 CCTV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및 웹사이트 노출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 발표 순서

- 1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 2 유형별 CCTV 설치사례
- 3 목욕시설 CCTV 설치 사진
- 4 Web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유형별 CCTV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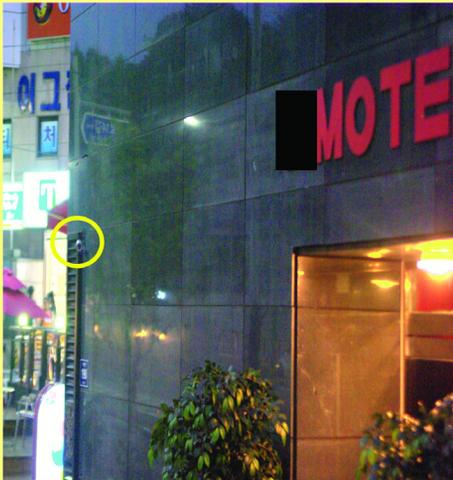


주택가



주차장

유형별 CCTV 설치사례



상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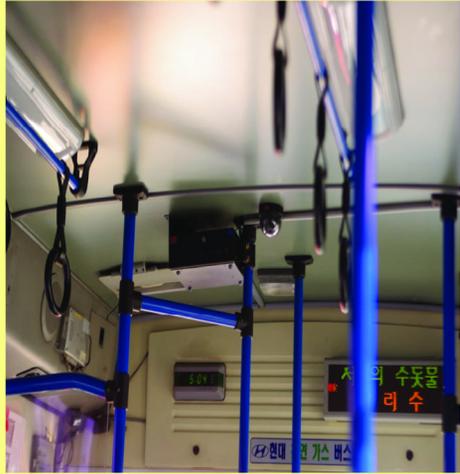


완구

유형별 CCTV 설치사례



버스정류장



버스 내

유형별 CCTV 설치사례



버스 내 설치된 CCTV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 유형별 CCTV 설치사례



택시 내 설치된 CCTV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 유형별 CCTV 설치사례



사무실 내



학교 내

유형별 CCTV 설치사례



공원 내



상가 내

유형별 CCTV 설치사례



빌딩 옥상



빌딩 옥상

## 목욕시설 내 CCTV 설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 목욕시설 CCTV 설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목욕시설 내  
탈의실 CCTV 설치 영상



영상: SBS 모닝와이드

목욕시설 내  
CCTV 설치 사진



사진: 무등일보

## 목욕시설 내 CCTV 설치사진



## 목욕시설 내 CCTV 설치사진



##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 조사결과

조사거리: 511M (소요시간 3분)

### 조사결과

- 총 20회 노출
- 9초에 한번씩 노출
- 25M에 한개꼴로 설치
- 모든 CCTV 가 도보지역을 향해 설치

### 조사지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및 투영영역

CCTC 설치 및 각도



투영영역



## Web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 Web에 노출된 CCTV 모음 사이트

City View

Private Data Room

Sea View

Private Office

### Web에 노출된 CCTV 의 해킹 및 범죄 활용 위험성

안철수 연구소의 위험성 분석

웹에 노출된  
CCTV 사이트

개인 주택 근처  
CCTV 확인

도메인 주소 확인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자 확인

## Web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웹에 노출된  
CCTV 사이트

사무실  
CCTV 확인

도메인 주소 확인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자 확인

CCTV 위치

러시아 니주니노브고로드주

CCTV 설치 장소

주지사 집무실



## 스마트폰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스마트폰 이용  
CCTV 소개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설치

스마트폰에  
노출된 CCTV 영상

실시간 확인



## 스마트폰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지역 교통상황 CCTV



술집 내부 CCTV



사무실 CCTV



수영장 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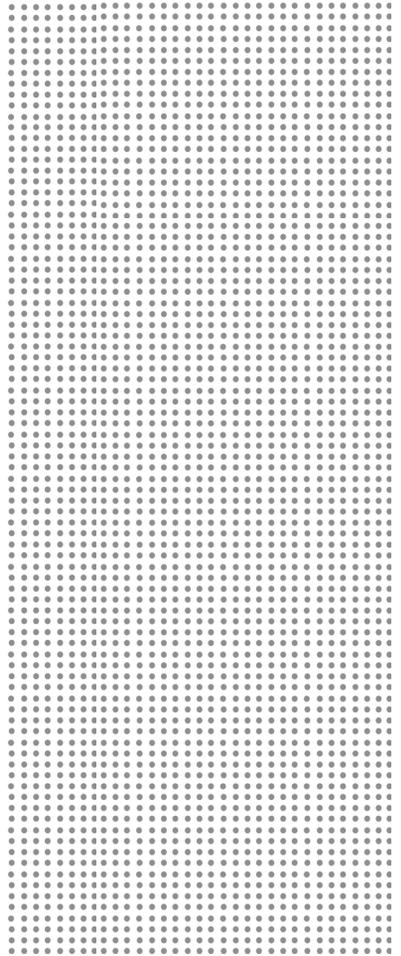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 토론문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정토론문

이 창 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

### 1. 영상정보 처리의 법적 의미

#### 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 영상정보 중에 개인식별을 가능케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

#### CCTV 등의 설치·운영

- CCTV 상의 개인영상정보를 녹화·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
  - ※ 영상정보의 단순 모니터링도 개인정보 처리로 보아도 무방(수집·이용·전송·폐기 등과 유사한 행위)

### 2. CCTV관련 국내 법제현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CCTV를 설치·운영해 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영상정보 보호조치 강구 필요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권고 가능

**제22조(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 컴퓨터등 :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웹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정보 보호조치 강구 의무
- 개인 또는 단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일 것
  - 은행, 마트, 찜질방, 회사 등과 같이 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하기는 하나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이동통신사업자, 유치원, 유아원, 학원, 양로원 등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영역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조(정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영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목욕장업자가 CCTV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 의무 부과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에는 설치·운영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1. 목욕장업

가 - 바. 생략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 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
- CCTV나 웹카메라를 이용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CCTV 등의 설치·운영은 금지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CCTV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 CCTV 등의 설치·운영 목적 제한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목적 제한

- 범죄 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교통단속
-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적 목적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사적 공간에서의 CCTV 등 설치·운영

- 정보주체의 동의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

- 계약 체결 및 이행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보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 3. CCTV 등의 설치·운영 방법 제한

#### CCTV 등 설치·운영의 공개

- 어떤 경우도 비밀감시 금지
- 출입문, 설치장소 등에 보기 쉽게 고지(안내판 설치)
  - 외국의 경우 보도에 CCTV가 설치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일반 행인들에게 고지
- 설치사실, 설치목적, 관리자, 연락처 등 공개

#### 최소 수집(촬영)의 원칙

- 설치·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 범위만 촬영
- 수집 목적의 확대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제정·시행

- 설치 목적·장소, 촬영범위, 녹화기록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관리책임자 등 규정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의 녹화 또는 전송 제한
- 영상정보의 암호화(ID/PW방식, 공인전자서명 방식, 화면암호화 방식 등)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사고발생시 중립적 제3자(경찰관 등) 입회하에서만 열람 가능
  - 관리자에 의한 상시 열람은 경비구역 등에 한정
- 접근기록(접근자, 접근일시, 접근목적 등)의 유지·관리
- 영상정보의 자동폐기 장치
-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조치 등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의 금지사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 또는 다른 장소·방향 촬영 금지
- 녹음기능 사용 금지

## 4. 종합의견

- 이번 실태조사는 CCTV의 설치장소, 고지의무 이행여부, 설치방법 중심으로 조사
  - CCTV의 설치목적, 촬영범위, 접근·열람제한, 관리지침의 운영 여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얼마나 허술하게 설치·운영되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냄
- 조사보고서는 CCTV 등의 설치·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규제장치의 조속한 마련을 제언
-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처리장치에도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CCTV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가능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인정보처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 공개된 장소의 해석 여하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존재(특정 이용자나 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도 공개된 장소인가?)
- 또한 CCTV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 불법적 감시를 조장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작, 수입,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 인증제 도입 검토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의 필요성과 법안의 검토

###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바,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관련 개별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이 있다.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sup>1)</sup>, 관련 개별법으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감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 국가기관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두고, 개인정보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명부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정보보호업무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 2) 정비방안의 흐름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그동안 급진전태온 전자정부 구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개인정보

1)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민간부문의 일반법이라고 성격지을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분야는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민간분야를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호 관련 규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용대상이 On-line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및 호텔·학원 등 일부 off-line 사업자에 한정되어 민간기관의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미흡하고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또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들이 불충분하고 문제가 많음이 최근에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의 정리

### 1) 첫 번째 쟁점 :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또는 일반법

우선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및 적용범위와 개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반법이 일단 필요하기는 하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은 개개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개 분야별로 특수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특별한 개인정보보호법들이 동시에 제정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법들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개개 분야에서 구체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러한 특별법을 통하여 일반적인 정보보호원칙들이 개개 분야에서 정확하게 구체화되며 특정 유형의 문제들에 적용되며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일반법(기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을 없애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제정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 2) 두 번째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과 정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준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어쨌든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공적 부문에서 국가기관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다. 왜냐하면 사인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수집할 권리 및 계약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간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며 빠르면서도 확실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제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줄이고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명령과 시장경제간에 일정부분 갈등관계가 성립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곧 국가는 법률의 근거없이 정보를 조사, 처리할 수 없는 반면에 시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개인관련정보를 처리하고 교환할 수 있다. 양자간 필요한 조정은 우선 입법자의 과제이다. 이러한 이익형량시 입법자는 일방적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 3. 보고서 내용의 검토

- 1) 토론자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헌법내용에 대한 부분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부문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이론제시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해야만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보고서는 민간부문에서 CCTV를 설치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CCTV 설치 및 운용을 국가에 의한 CCTV 설치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2-1) 곧 이 보고서의 목차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제4장 CCTV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논의  
제1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논의

또는

제1절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2) CCTV의 기본권 침해 여부

3) 민간부문 CCTV의 기본권 효력(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기본권의 구속력이 국가적 행위 이외에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확장되어 적용된다는 것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면서부터 사법의 영역에서도 기본권이 적용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민간 CCTV설치 및 운용으로 인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위 견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3. 민간설치 CCTV의 기본권 침해 해결

1)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오늘날 기본권은 사인도 침해할 수 있다는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민간 CCTV설치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인 민간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시 해결에 대해 알아본다.

(3) 민간설치 CCTV와 관련한 헌법소원 가능성

즉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인이 설치한 CCTV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보호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개인 주택이나 금은방, 은행 등에서 공동쪽으로 설치한 CCTV나 목욕장 등에서 설치한 CCTV에 의해 촬영 및 감시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인의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보호입법의 부작위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입법부작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와 운용을 국가와 동일하게 보아, 곧장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의하여 법률상 근거를 갖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입증되는 기본권제한으로 보았다고 판단된다. 곧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 및 운용을 헌법상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기본권제한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 및 운용은 기본권주체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행사일 경우도 있으므로 헌법상 원칙과 예외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가간 관계와 획일적으로 동일시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는 국가에 의한 CCTV 설치와 민간에 의한 CCTV 설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이에 터잡아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세심하게 분류, 검토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법제정비방향의 흐름과 내용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3) 다음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위 규정 중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 이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 이러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가 일관되지 못하다. 곧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sup>2)</sup>이라고 하였으나 그 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sup>3)</sup>사건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sup>4)</sup>사건에서는 질병이나 전과기록과 같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3) 2007. 5. 31. 2005헌마1139

4) 2008. 4. 24. 2006헌마402·531(병합)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관련 검토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그 위반 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보고서 68, 117, 140쪽 등)
- 「공중위생관리법」은 제3조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때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 및 설비기준의 준수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목욕장영업에 있어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의 경우 CCTV 설치가 금지되는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 침해가 현저하거나 심각한 것으로 기술하고 당국의 단속과 계도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법규위반(Rechtssatz Verletzung)인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수단의 강구를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경우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의 관련조문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지난 9월 30일 폐기되었으므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재검토하는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함(보고서 68, 112~113쪽 등)
- 「개인정보 보호법(안)」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현행법이 아래와 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로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음(보고서 33~34쪽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2010. 4.15 법률 제10258호]」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욱이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지됨
  - 그 밖에 보고서 111쪽에 제시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으로 설정하는 데 의문이 있음
-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원론적 고찰과 개선책 모색의 보완 요망(보고서 111쪽)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민간분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 법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련규제를 설정한 것이고 산업용 텔레비전(ITV; industrial television) 또는 전용 텔레비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CCTV의 운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구의 전반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음
  - CCTV 운영의 경우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개념,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규율적합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적 투영에 대하여 개념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공·사법이원론에 따라 경우 국가·국민, 공익·사익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행정주체에게 우월적인 지위, 즉 공권력이 주어지는 부대등한 공법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 다중이용시설나 공공장소에 운영되는 CCTV를 공적 투영으로 규명하는 데는 법적용의 혼란을 가중함(보고서 74, 81, 135쪽 등)
- 가령 대중교통시설인 경우에도 지하철의 경우 지방공기업이 설치·운영하는 CCTV는 그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까닭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임
  - 더욱이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별도 개별입법을 논하기 이전에 현행법의 문제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태조사결과와 연계하는 연구구성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봄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노사정책국 차장)

## 1. 버스 내 CCTV 설치 목적 및 실태

### 가. 목적

2004년 7월 이전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전 현금으로만 버스요금 결제하던 당시의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은 운전기사들의 요금횡령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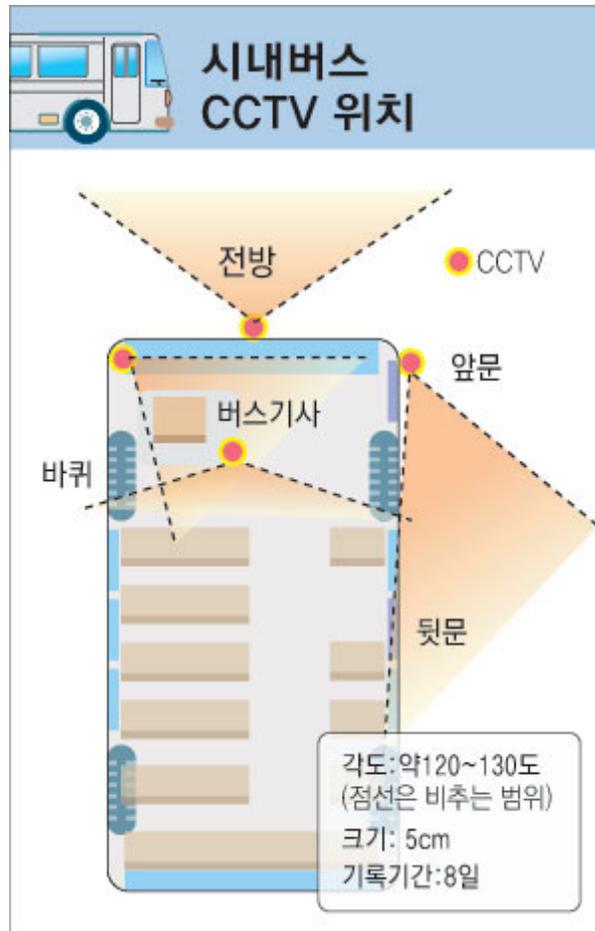
서울시 및 기타 광역시도 지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각 지자체의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차등지급 등에 따라 회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CCTV 설치를 확대하였고, 차내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의 분쟁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나,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

### 나. 시내버스 CCTV 설치 실태

① 2010. 6월 현재,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의 문답조사 결과, 서울시내버스 총 68개 회사 중 57개사가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 하지만 2010. 12월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각 지부와 조합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버스 7,736대의 버스 전 차량에 CCTV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됨.

② 버스 전방에 신호 위반 및 배차간격 감지 또는 사고예방 목적의 CCTV1대, 운전석에 탑승객확인 및 요금 수납 현황 파악을 위한 CCTV1대, 차량내 승객의 이동 상황 및 사고 관독을 위한 CCTV 1대, 승객의 승하차 확인을 위한 버스 우측 외각의 CCTV 1대 등, 모두 4대의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이고, 경우에 따라 3~6개 정도까지 다양하게 설치되

어 있음.



③ CCTV는 기존의 VTR 방식에 DVR방식이 최근 증가하면서 혼용되고 있는 상황.

④ 서울시나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각 회사에 CCTV설치를 강요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상황.

## 2. 시내버스 CCTV설치의 순기능과 역기능

### 가. 순기능

① 버스운전자가 승객이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보행자와의 차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에서 공정한 원인 규명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음.

② 운전자들의 불법, 난폭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대형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연료비 절감 등에 기여함

### 나. 역기능

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의 운수종사자들은 CCTV의 설치 및 오용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 있음

#### ① CCTV를 통해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환경적 요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운영의 관리 감독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시 예산으로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있음. 또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운행, 대시민 서비스, 경영활동 개선등 시내버스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운수종사자의 운전행태개선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각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평가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2,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12조 1항)

<기본 평가분야 3개분야 10개지표, 총2000점 만점>

평가 분야	평가지표 및 방법
운행 관리 (600점)	차량사고지수, 안전운행 준수등의 지수 등
서비스개선 (800점)	시내버스서비스만족도 조사, 배차정시성등 운행실태 평가 등
경영 개선 (600점)	차량관리 지표, 인건비 관리 적정성 등

각 회사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서울시가 지급하는 성과 이윤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총 2000점 중 1400점에 해당하는 운행관리 및 서비스 개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운전자들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그 중 BMS(위치정보확인)와 CCTV(운행태도 확인)가 운전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위 기본 평가 지표 외에 <사고예방시스템설치 및 운영>이라는 가산점 항목을 따로 두어, CCTV설치 개수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서울시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CCTV 설치를 권장하는 상황임.

## ② CCTV오남용 사례의 유형

### ㄱ. 회사가 자발적으로 별도의 CCTV 관리 모니터 요원을 두고 상시 감독하는 경우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CCTV 기록을 관찰하여 해당 근로자를 불러 지적한 후, 경위서를 쓰게 한 후,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를 누적시킨 후, 회사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의 각종 진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나 기타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함.

### <취업규칙상 해고 또는 징계 규정의 예>

- 근무태도 불량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시말서 제출한 자
- 품행불량, 업무태만, 1년간 시말서 3회제출자
- 전발, 연차, 추월,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실시
-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지연운행을 한자.

### <사례 >

- 1) 00 여객 - 매주 목요일을 징계의 날로 정해 놓고 징계함 - 1년간 징계건수가 300여건에 이름
- 2) 00 운수 - 운행 중 핀마이크를 사용하여 안내방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명을 징계하고,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축적했던 CCTV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고함.

3) 00 교통 - 옷을 걸어 놓은 위치가 CCTV를 가리게 되었고, 고의로 지연운행을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함.

ㄴ. 승객들의 버스 이용 불만에 대한 민원이 있고, 서울시나 구청의 조사과정에서 CCTV 기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나 원클릭 민원센터를 통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전체 민원 중 대중교통관련 민원이 가장 많음.

#### <민원으로 인한 CCTV 기록 확인 과정>

다산콜센터 120민원, 원클릭 민원등 접수 ▶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신고 불편조사팀 사건 조사 ▶경우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 이송하여 재조사 ▶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 이를 빌미로 CCTV 자료 확인 ▶ 이때 회사가 알게 된 사유를 이유로 즉시 징계 함

이 과정에서 허위민원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녹화 녹음된 CCTV 기록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다른 내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예) 무정차통과를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으나 운전자와 승객의 주장이 달라 CCTV를 확인 하였으나, 허위민원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당시 CCTV기록상 승객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함.

#### ㄷ. 기타

서울시가 모니터링요원을 승객으로 위장시켜 암행감찰하거나, 회사가 임의로 고용한 모니터링요원이 승객으로 가장하여 탑승 후 운전자의 업무태도 등을 체크하여 보고한 경우 CCTV가 근거기록이 됨.

### 3. CCTV 기록의 자의적 처리 실태 및 시내버스 운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CCTV 기록의 오남용이 시내버스 운전자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정신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있게 되며, 심한 경우 생계유지 수단인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음.

회사는 언제나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게 되고, 국민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달리, 회사에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 때론,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해 CCTV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기기가 고장 났다는 등의 이유로 CCTV기록 제시를 거부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정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음.

▶감시 수단은 되면서 권리구제수단은 되지 못하는게 현실

1일의 승무정지 징계만으로도 임금 손실이 상당하며 해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노동부나 법원 등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낙인 찍혀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회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서울시버스노동자들의 현실로,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로 회사의 처분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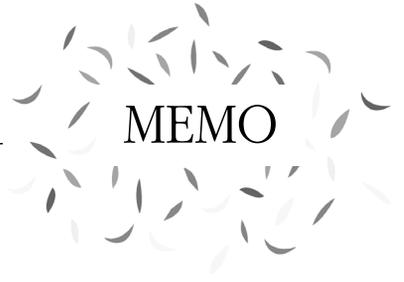
예) 운행 중 경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에 비협조자로 낙인찍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누적되었던 CCTV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누범 가중한 후에 해고를 통보한 후, 해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해당 근로자는 법적 투쟁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호봉이 깎인 채로 신규입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회사는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됨.

## 4. CCTV 설치 및 데이터 활용의 제한 필요성

CCTV가 공익과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순기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하지만 CCTV가 오남용될 시, 형사처벌보다도 강력한 권리 침해가 무방비 상태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사적영역에서 무분별한 CCTV의 설치와 데이터의 자의적 활용은 기본권제한의 일반 원리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제화하여야 할 것.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법률”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의결사항도 아닌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오히려 CCTV 설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및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의 엄격한 적법절차를 원용하여 CCTV의 설치나 지득한 정보의 처리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준공영제하의 시내버스 운영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정비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단체보다 기본권 보장의 사적영역 확대적용이 보다 절실하다 할 것임.



MEMO





MEMO

---

---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 인 쇄 | 2010년 12월

| 발 행 | 2010년 12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9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비매품〉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